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911-1996-707855



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의 1필지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7년8월29일	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, 412	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2.36㎡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7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97년8월29일 제38217호		소유자 고삼순 460503-*****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61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7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2011년12월7일 제64116호	2009년2월3일 전거	고삼순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길11번길 29-9
2	가압류	2012년5월10일 제22426호	2012년5월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가압류결정(201 2카단965)	청구금액 금20,772,814 원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160111-0038524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-3 (소관:경남센터)
3	가압류	2012년7월5일 제32750호	2012년7월5일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(201 2카단2707)	청구금액 금76,651,245 원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 111271-000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-3 (소관:경남지역본부경남중부)
3-1	3번등기명의인표시		2011년10월31일	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의 1필지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변경		도로명주소	국제금융로 24(여의도동) 2013년10월2일 부기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13년4월4일 제15444호	2013년4월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13타경426 4)	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 111271-000133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(여의도동) (남부권본부)
5	소유권이전	2013년11월5일 제50935호	2013년11월5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소유자 김득임 700405-*****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8길 16, 103동 403호(완월동, 화인아파트)
6	2번가압류, 3번가압류, 4번강제경매개시결 정 등기말소	2013년11월5일 제50935호	2013년11월5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15일 제3664320호	2025년7월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310 37)	채권자 이정선 601115-*****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85-51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근저당권설정	1997년9월10일 제40574호	1997년9월9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0,800,000원 채무자 고삼순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611 근저당권자 진양농업협동조합 191136-0000459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17-7 공동담보 토지등기제411,412 건물 등기제 위 양지상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7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		2011년10월31일	진양농업협동조합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

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의 1필지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변경		도로명주소	이반성면 창촌길 28 2013년10월2일 부기
2	근저당권설정	2011년12월7일 제64117호	2011년12월6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00,000,000원 채무자 고삼순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길11번길 29-9 근저당권자 백종엽 550816-*****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71, 938동 1403호 (중동,마리내마을) 공동담보목록 제2011-547호
2-1	2번근저당권가처분	2012년7월16일 제34331호	2012년7월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가처분결정(201 2카단1524)	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 111271-000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(여의도동) (소관:경남지역본부 경남중부) 금지사항 양도,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
3	2-1번가처분등기말 소	2013년2월8일 제6455호	2013년2월7일 해제	
4	2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13년2월13일 제6903호	2013년2월4일 해지	
5	1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	2013년11월5일 제50935호	2013년11월5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
6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5일 제50936호	2013년11월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42,000,000원 채무자 김득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8길 16, 103동 403호(완월동,화인아파트)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110111-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(충정로1가) (신마산지점) 공동담보 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 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2

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의 1필지

【 공동담보목록 】					
목록번호	2011-547				
일련번호	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	관할등기소명	순위번호	기 타 사 항	
				생성원인	변경/소멸
1	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 의 1필지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2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2	[토지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09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1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3	[토지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2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4	[토지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2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2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5	[토지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3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1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6	[토지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818-2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	2	2011년12월7일 제64117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3년2월13일 제6903호 해지

-- 이 하 여 백 --

열람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911-1996-707855

[건물]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411의 1필지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득임 (소유자)	700405-*****	단독소유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8길 16, 103동 403호(완월동, 화인아파트)	5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15일 제3664320호	채권자 이정선	김득임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5일 제50936호	채권최고액 금42,000,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	김득임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